

가맹금 예치증서			
예치번호			
예치신청인 (가맹점명)			
수령인 (영업표지)			
예치기관명		계좌번호	
예치금액	₩	(금	원 정)
예치이율	연 %	관리수수료	₩
「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5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9제4항·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치가맹금을 예치하였음을 증명합니다. 년 월 일 예치기관의 장(지점장) . 인			

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

-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.
-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본 증서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해야 합니다.
-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.

가맹점사업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

-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.
-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예치가맹금 지급보류 요청서를 작성하여 예치기관에 요청하면 예치가맹금 지급이 보류됩니다.
 -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
 -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, 조정,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
 -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